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법초안 작성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상훈, 윤기원, 장태상 변호사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1969년 8월 7일 박정희 정권의 삼선 개헌안 발의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 등을 위하여 이 법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에 의한 적용대상을 1969년 8월 7일이후 1998년 2월 24일 지의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함(안 제1조)

나. 유족의 범위 및 보상금 지급 등 예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5조).

다.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특별재심을 청구할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요시찰인명부의 작성 등 불이익 행위를 금지함(안 제11조)

바. 정부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추모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1969년 8월 7일 삼선 개헌안 발의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권위주의적 통치 또는 국민의 기본권 제약으로 탄압받거나 이에 항거하여 헌법상 국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기본적 권리를 회복시키거나 현저히 신장시킨 경우를 말한다.
2.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 법에 의한 적용을 받도록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3조(유족 등의 범위)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

용대상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결정한다.

③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후에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원칙)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7조(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민족민주운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행위여부의 판정 및 고발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한 위원회 의결사항
6. 기타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자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검증 또는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기타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재심)

①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유죄의 확정판결(다른 범죄와 경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1항의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26조 내지 제328조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 내지 제3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동재심의 성격에 저촉하지 아니하는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불이익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타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요시찰인명부의 작성, 여권발급절차에 있어서의 예외적취급규정의 작성 등 차별대우(이하 "불이익행위"라 한다)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불이익행위여부의 판정 등)

①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불이익행위를 당한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불이익행위여부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행위여부의 판정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불이익행위로 인정된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13조(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정부지원 등)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민주화운동 관련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내지 제7장(제69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되, "4·19혁명사망자" 또는 "4·19혁명부상자"의 예에 따른다.

제16조(보상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학자금(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받은 입학금, 수업료, 기타 학비를 포함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 보상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환수 또는 징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7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상금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수 있다.

제18조(시효)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9조(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 손상행위 또는 반민족민주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법에 의한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벌칙)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로 신고를 한 자 또는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의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그동안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중 그 사인에 의심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그 진상은 역사속에 매몰될 처지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새로운 정부가 출현함과 발맞추어 더 이상 진실을 과거에 묻지 않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의문사란, 사인이 명백히 자연사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권력등의 행사로 사망한 것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정의(법제2조)

나. 대통령직속하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법제3조)

다.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대상사 선정, 고발, 영장청구요청, 재정신청여부 등을 결정(법제4조)

라.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요청 및 소속공무원의 파견등을 요청할 수 있음(법제9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음(법제10조)

바. 위원회가 관할 지방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는 이를 관할 지방 법원에게 신청하여야 함(법제11조).

사. 사건조사기한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정(법제12조).

아. 위원회는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를 검사등에게 고발하여야 하고, 명백한 자연사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유공자명예회복및예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함(법제13조).

자. 검사등이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관할 고등법원등에 재정신청을 하도록 함(법제14조).

차. 자수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며, 내부정보제공자의 신변보호장치 마련(법제15조, 제16조)

카. 이 법이 만료된 이후부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법제17조)

타.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벌칙조항 마련(법제18조)

특별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1969년 8월7일 박정희정권의 3선 개헌 발의일부터 1998년 2월24일까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의문사하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 의해 집계된자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그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의문사"라 함은, 사인이 명백히 자연사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권력등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대통령은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3월내에 대통령 직속하에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기타 위원회의 조직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회의 직무범위】 위원회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진상 규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단, 유가협에서 선정한자로 한정한다.)
2. 고발, 영장청구 요청, 재정신청 여부의 결정
3. 민주화운동유공자명예회복과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사요청
4.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5조 【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전조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률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

② 위원중 3인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독립】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른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8조 【보수 및 경비】 위원의 보수 및 위원회의 경비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수사협조요청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안기부장, 기타 관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증거조사】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감정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영장청구요청】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당해 사건의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사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고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위 기간내에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 3월마다 대통령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건처리】
① 위원회는 조사결과 명백히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내용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자를 검사 또는 검찰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 명백한 자연사로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의 경우 '민주화운동유공자명예회복및예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정신청의 예외】
① 위원회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 시행전에 이 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형의 감면】 의문사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자가 위원회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한다.

제16조 【정보제공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률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보하였거나 하려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기간동안 전항의 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등 잠정적 구제조치를 할 수 있고, 제공자도 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공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기관에서는 제공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의문사의 진상 규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공소시효의 예외】 이 법이 발효된 이후부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18조 【벌칙】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위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 제1항, 제2항의 요청에 불응한 자.
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 및 증언요구를 거절한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특례규정) 이 법 제2조의 규정된 의문사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이 법률을 적용한다.

1박 2일 농성 결합 투쟁 지침

당일 오전 11시부터 익일 오후 1시까지 특별법제정 촉구 농성 결합.

1. 취지

1998년 한해 동안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국민캠페인을 진행하다 11월 4일부터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 농성을 진행 한지도 11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되어야 하나 현실은 유가협과 추모연대의 투쟁이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백발이 성성한 열사들의 부모님들께서 전체 민족민주운동진영을 대표해서 하는 투쟁이 되었습니다. 농성을 진행하며 온갖 난관에 봉착하였으나 그 때마다 아름답게 살다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신 열사들을 생각하며 강력한 의지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여야간의 정쟁으로 한 동안 소강 상태로 있던 국회가 2월 22일부터 다시 열려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왔으나 세부 사항까지 다루어지는 지금의 시기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모든 투쟁이 그러하듯이 마지막에 더 공을 들여야 투쟁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민족민주운동진영 모두의 힘을 모아 법안이 왜곡됨 없이 만들어져 우리 모두의 법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1박 2일 농성투쟁'은 항상적으로 농성에 결합할 수 없는 제 단체들의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여 제안되었으며, 이 투쟁을 통해 단순 지원 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참여 단체의 성원들과 현재 중심적으로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투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2. 일정

11:00	농성장 집결. 상견례
12:00까지	점심 식사 준비
13:00까지	소규모 집회
14:00까지	점심 식사 및 설것이
17:00까지	농성 진행상황 경과, 법 제정 의의 및 자기 소개
18:00까지	저녁 식사 준비
19:00까지	저녁 식사 및 설것이
20:00까지	평가회의
22:00까지	단체 활동 등 운동 현안 발표
07:00까지	취침
08:00까지	세면
09:00까지	아침 식사 준비, 아침 운동
10:00까지	아침 식사 및 설것이

3. 사전 준비

1) 1박 2일 농성 투쟁 결합 단위들은 **최소한 농성 투쟁 3일 전에 현재 투쟁 주체와 연락을 하여 현장의 상황과 구체적인 준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선발대가 와서 진행 상황을 확인,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2) 1박 2일 농성 투쟁 결합자들에게 **사전 교양을 하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제공해 드립니다.

3) **집회 내용, 단위 활동 소개, 노래와 율동 등을 참여 단위가 준비해 와야 하며 교양 등의 형태를 결합하여도 좋습니다.**

4) 준비물은 **현수막, 대자보 등과 함께, 쌀과 부식 등 최소한 참여 인원이 먹을 양을 준비해 와야 합니다.** 이는 농성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재정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5) 농성 투쟁에 결합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농성의 주체임을 각인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6) 이 투쟁을 통해 가능하면 **주 1회 정례적으로 결합하였으면 좋을 듯 합니다.**

7) 농성 투쟁 **결합 이후에 지역과 부문에 이를 확산하는 투쟁을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박 2일 농성 투쟁을 통하여 모두에게 힘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신 : 한국인권단체 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고상만 간사, 전화 : 777-0643)

제목 : 인권협 성명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는 즉각 나서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는 즉각 나서라

3월 4일 한국 방송공사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는 '잊혀진 죽음 -의문사'를 방영하였다. 신호수, 이철규, 허원근, 김두황씨 등 유가협에 접수된 42건의 의문사에 대해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다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의문사의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때마다 매번 의문의 죽음에 대한 규명을 약속했지만 매번 이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픔을 가진 유가족들이 다시한번 국민의 정부가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장기 농성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의문의 죽음을 있는 그대로 규명하라고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논리이다.
특히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유가족들이 십수년이 넘도록 제기했던 여러 의혹들이 사건 관련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객관적인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의문의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유가족에게 서약했던 진상규명의 약속을 지켜야한다.

더 이상 민주주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을 빼앗기는 야만적인 독재권력의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유가족의 아픔에 함께하며 국민의 정부만은 반드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수많은 이들의 진실을 밝혀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정부와 국민회의는 대통령과 당직자들의 약속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하여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1999년 3월 5일
한국 인권단체 협의회 상임의장 김정숙

소속 단체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한국교회 인권센타 - 참관단체 광주 인권지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E (KCDM)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2-70 연남빌딩402호 (전화)742-3180 (팩스)742-3181

문서번호 : 명예회복 990324-1
수신 : 사회부 기자
제목 : 보도 협조 요청

1. 언론 정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유가협과 추모연대는 현재 상태로의 인권법에서는 의문사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가능하게 수정하던지 특별법 제정을 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보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의문사 진상규명 국가인권기구에서 불가능하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 배은심, 의문사지회장 허영춘)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의장 이창복)는 국가인권기구에서 의문사 진상 규명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가능하게 보완하던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으로 한 많은 세월이었다. 혈육을 잃고, 동료를 잃고 살아 온 세월은 죽은 것 이상의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에 맞섰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안기부, 기무사, 보안수사대에 끌려가 참혹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다. 그리고 시멘트 덩이에 묶인 채 송도 앞 바다 속에 빠트려 지거나, 스스로 M16 소총으로 세 발, 네 발씩 쏘아 자살한 것으로 위장되거나, 산 속의 절벽에서, 중앙정보부 건물에서, 안양병원 등지에서 투신 자살이나 실족한 것으로 위장되거나, 동굴이나 군 부대에서 목 매인 시체로 발견되거나, 거문도 해안에서, 아암도 앞 바다에서, 광주 수원지에서 참혹한 변사체로 발견되거나, 경부선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왔다.

1988년 135일 간의 농성, 1994년 10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 관계 기관에 진

상 규명 탄원,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국회에서 진상 규명 소위 구성,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등 모든 것을 다 하였으나 언제나 부딪히는 벽은 가해 기관인 안기부, 기무사, 보안수사대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진실을 제보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해서 입법부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인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였음에도 진상 규명에 접근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유가협과 추모연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의문사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7개월 여에 걸친 대국민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140여일에 이르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 동안 국방부 특조단에서의 진상 규명 의사도 거부하면서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국가인권기구에서의 의문사 진상 규명도 법무부 안이 많이 반영되어 진상 규명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 이유는 위상 자체가 특수법인으로 되어 기존의 국가 기관과 대등한 관계를 갖기 어려우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권한 등이 극히 미진하여 안기부 등에 접근하기가 애초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사상의 기밀 등의 이유로 증언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요건들이 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의문사 진상 규명은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이다. 또한 진상 규명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인 증인에 대한 보호와 포상 규정이 미비하여 증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제보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유가협과 추모연대는 국민회의와 법무부에 현재와 같은 인권위원회 법으로는 의문사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에 여기에서의 의문사 진상 규명을 거부하는 바이다. 만일 인권법에서 이를 하고자 한다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인권위원회 법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속히 당정 협의를 거쳐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의문사 진상 규명은 이제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 모두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통령도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와 국민회의는 의문사 진상 규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제정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일 과거의 정권에서와 같이 적당히 처리하려 할 경우에는 인권 대통령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1999. 3. 24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지회장 허영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 이창복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E (KCDM)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2-70 연남빌딩402호 (전화)742-3180 (팩스)742-3181

문시번호 : 명예회복 990330-1
수　신 : 재 단체
제　목 :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삭발식 및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대통령 면담 보고
연 락 처 : 김학철 (추모연대 집행위원장 016-257-3180)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삭발식 및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대통령 면담 보고

●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삭발식 보고

3월 29일, 12시 30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삭발식은 150여일간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천막농성에도 불구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부를 규탄하며 진행된 것이다.

유가협, 전국연합, 서울연합, 인천연합,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불교인권위, 천주교인권위, 국민승리21, 양규모, 한총련 선봉대, 전대기련, 전국의 추모사업회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삭발식은 김학철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이성우 IMF투쟁본부장, 곽노현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대표 곽노현 교수님 등의 연대사가 있은 후 식발식이 진행되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42분의 엉정을 앞에 두고 유가협 의문사 지회 회원들은 백발이 성성한 미리를 삭발하셨다.

삭발을 하신 분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 1984년 4월 2일 부산 수산대생으로 군 복무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허원근 동지의 아버님
- 김을선 : 1987년 6월 8일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로 노조활동을 하던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정경식 동지의 어머님

- 신정학 : 1986년 6월 19일 노동자로 대공과에 연행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신호수 동지의 아버님
- 김종욱 : 1986년 6월 21일 서울대생으로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채 발견된 김성수 동지의 아버님
- 박재원 : 1987년 3월 19일 부산대생으로 육군 입대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한 박필호 동지의 아버님
- 최봉규 : 1987년 9월 8일 서울대생으로 군 복무 중 사회과학서적을 읽다 보안대 적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최우혁 동지의 아버님
- 이기주 : 1995년 11월 28일 장애인노점상으로 골리앗 농성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덕인 동지의 아버님

삭발식이 진행된 후 신정학 아버님의 성명서 낭독과 이천재 서울연합 의장님의 연대사가 있었으며, 삭발을 하신 유가협 의분사 지회 회원들의 결의의 말씀이 이어져 의분사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후 영정을 들고 정부종합청사를 돌며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막는 전경들과 격렬한 몸싸움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10여명의 유가협 회원을 비롯한 집회참석자가 연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집회참석자들의 격렬한 항의로 모두 풀려났다.

짐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의문사 진상규명의 결의를 다지는 집회를 가지고 해산하였다.

●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대통령 면담 보고

3월 30일은 국무회의에서 인권법에 대한 제정안이 확정되는 날이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인권법 국무회의 의결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석한 유가협 회원들은 침묵시위를 진행했고, 뒤이어 대통령에게 전달할 서한을 가지고 청와대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역시 경찰들의 봉쇄로 나아갈 수 없었고, 격렬한 항의 끝에 대표단을 정하여 서한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배은심 유가협 회장,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김학철 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을 대표단으로하여 청와대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정부와 여당은 자식을 잃은 설움만도 가슴이 찢어질 텐데,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잘라가며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가슴을 달래기 위해, 다시는 이런 어울한 죽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성 명 서

의문사 진상규명, 국가인권기구에서 불가능하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 배은심, 의문사지회장 허영춘)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의장 이창복)는 국가인권기구에서 의문사 진상 규명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가능하게 보완하던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으로 한 많은 세월이었다. 혈육을 잃고, 동료를 잃고 살아 온 세월은 죽은 것 이상의 고통스러운 세월이었다.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에 맞섰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안기부, 기무사, 보안수사대에 끌려가 참혹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다. 그리고 시멘트 덩이에 묶인 채 송도 앞 바다 속에 빠트려 지거나, 스스로 M16 소총으로 세 발, 네 발씩 쏘아 자살한 것으로 위장되거나, 산 속의 절벽에서, 중앙정보부 건물에서, 안양병원 등지에서 투신 자살이나 실족한 것으로 위장되거나, 동굴이나 군 부대에서 목 매인 시체로 발견되거나, 거문도 해안에서, 아암도 앞 바다에서, 광주 수원지에서 참혹한 변사체로 발견되거나, 경부선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왔다.

1988년 135일 간의 농성, 1994년 10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 관계 기관에 진상 규명 탄원,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국회에서 진상 규명 소위 구성,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등 모든 것을 다 하였으나 언제나 부딪히는 벽은 가해 기관인 안기부, 기무사, 보안수사대 등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 관련 자료를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진실을 제보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해서 입법부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인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였음에도 진상 규명에 접근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유가협과 추모연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의문사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7개월여에 걸친 대국민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140여일에 이르는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그 동안 국방부 특조단에서의 진상 규명 의사도 거부하면서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국가인권기구에서의 의문사 진상 규명도 법무부 안이 많이 반영되어 진상 규명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 이유는 위상 자체가 특수법인으로 되어 기존의 국가 기관과 대등한 관계를 갖기 어려우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권한 등이 극히 미진하여 안기부 등에 접근하기가 애초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사상의 기밀 등의 이유로 증언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요건들이 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의문사 진상 규명은 형식에 그치고 말 것이다. 또한 진상 규명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인 증인에 대한 보호와 포상 규정이 미비하여 증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제보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유가협과 추모연대는 국민회의와 법무부에 현재와 같은 인권위원회 법으로는 의문사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에 여기에서의 의문사 진상 규명을 거부하는 바이다. 만일 인권법에서 이를 하고자 한다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인권위원회 법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속히 당정 협의를 거쳐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의문사 진상 규명은 이제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 모두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 대통령도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와 국민회의는 의문사 진상 규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제정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일 과거의 정권에서와 같이 적당히 처리하려 할 경우에는 인권 대통령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1999. 3. 26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배은심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지회장 허영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 이창복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E (KCDM)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3가 29-15호 윤민빌딩 4층 (전화) 718-0479 (팩스) 718-0478

문서번호 : 명예회복 990406-1
수신 : 사회부 기자
제목 : 보도 협조 요청

보 도 요 청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유가협 의문사지회 회원 국민회의 당사 농성 돌입

1. 언론 정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회장 배은심) 회원들이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한 지 5달이 넘었습니다.

3. 지난 3월 29일, 유가협 회원들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인권법으로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이룰 수 없기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4. 그리고 오늘(4월 6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여당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회의 당사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을 첨부하오니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4월 6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기만적인 인권법을 무효화하고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으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이하 추모연대)주최의 집회를 마치신 유가협 부모님 6분이 국민회의 당사 점거 농성에 돌입하셨다.

지금까지 국민회의는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요구에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해왔고 인권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했었다. 하지만 현재 국민회의와 정부가 합의한 인권법의 내용으로는 40여건이 넘는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첫 번째 이유는 가해 기관이 가해 기관이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아닌 노동운동 과정에서 기업주 등에 의해 살해 된 경우 등에는 의문사 진상규명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고 인권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때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둘째로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증언, 자료제출 등 모든 조사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요건들이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사 진상 규명뿐 아니라 일반 인권침해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이 마음 먹은대로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기때문이다. 또한 진상 규명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인 증인에 대한 보호와 포상 규정이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증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제보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이러한 기만적인 인권법에 분노하신 유가협 부모님들은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요구를 확실히 전달하고 인권법안에 담아내겠다는 결의로 집회가 끝난 뒤 국민회의 점거 농성에 들어가신 것이다. 들어가시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기는 했지만 국민회의 측은 인권위원 면담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현재 허영춘 의문사 지회장님을 포함한 6분의 유가협 부모님들은 인권법안을 무효화하고 의문의 죽음이 진상규명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법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회의의 책임있는 답변과 계획을 확인한 후에야 농성을 풀 계획이다. 부모님들은 현재 국민회의 당사 2층 민원인 대기실에 계신다.

국민회의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가신 분들 명단

허원근동지의 아버님, 박필호동지의 아버님, 김성수동지의 아버님, 신호수동지의 아버님, 최우혁동지의 아버님, 우종원동지의 어머님, 장현구동지의 아버님

보도자료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유가협 회원 5인, 단식 돌입!!!

- 인권법 기만이다.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

4월 6일(어제)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기만적인 인권법을 무효화하고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으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이하 추모연대)주최의 집회를 마치신 유가협 회원들이 국민회의 당사 점거 농성에 돌입하셨고, 4월 7일(오늘) 아침부터는 유가협 회원 5인이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지금까지 국민회의는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요구에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해왔고 인권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했었다. 하지만 현재 국민회의와 정부가 합의한 인권법의 내용으로는 40여건이 넘는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첫 번째 이유는 가해 기관이 가해 기관이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아닌 노동운동 과정에서 기업주 등에 의해 살해 된 경우 등에는 의문사 진상규명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고 인권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때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둘째로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증언, 자료제출 등 모든 조사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요건들이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사 진상 규명뿐 아니라 일반 인권침해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이 마음 먹은대로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기때문이다. 또한 진상 규명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인 증인에 대한 보호와 포상 규정이 아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증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제보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이러한 기만적인 인권법에 분노하신 유가협 회원들은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요구를 확실히 전달하고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이루어내겠다는 결의로 집회가 끝난 뒤 국민회의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농성 2일째인 오늘은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현재 점거, 단식 농성에 돌입한 5인의 유가협 회원들은 인권법안을 무효화하고 의문의 죽음이 진상규명 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회의의 책임있는 답변과 계획을 확인한 후에야 농성을 풀 계획이다. 부모님들은 현재 국민회의 당사 2층 인권위원회실에 계신다.

● 국민회의 당사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신 분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배은심 (유가협 회장, 이한열 씨의 어머님),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 지회장, 허원근 씨의 아버님), 김종욱 (김성수 씨의 아버님), 장남수 (장현구 씨의 아버님), 김수연 (한상근 씨의 어머님)

●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 **일 시 : 1999년 4월 8일 오후 12시**
- **장 소 : 국민회의 당사앞**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간 담 회

1999. 5. 14

새 정 치 국 민 회 의

열 린 정 치 포 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간담회 자료

1999. 5. 14. (금) 오후 12:30
국회 귀빈식당

1. 입법 추진 경과

○1998. 9. 15. 국민회의 이길재의원 대표로 법률 제정에 대한 청원
○1998. 10. 20.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간부들과 오찬 후 관련 법안 제정지시
○1998. 12. 11. 유선호의원 및 열린정치포럼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1999, 2. 5.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정무위로 소관위원회 조정, 이송
○1999. 5. 14.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계류 중
현재 192일째 천막농성중

※현재 이신범의원외 30인(한나라당) 발의(98. 7. 30) 법안도 정무위 계류 중

2. 입법 과정상의 문제점

○국가보훈처의 반대
- 현재의 국가유공자 체계는 '국가수호를 위한 전투 등으로 인한 희생자 및 부상자' 중심으로 되어 있음
- 독립유공자 및 4·19유공자의 경우, 과거 독립된 법으로 되어 있었으나 군사독재 시절 현재의 국가유공자법으로 무리하게 통합시킨 것으로, 국가유공자체계 자체의 근본적 개선없이 5.18관련자와 민주화운동관련자를 현행 국가유공자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은 무리
- 상이군경, 참전군인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지 못한 약 140만명에 이르는 집단의 격렬한 반대

○법적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

- 5·18 관련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편입이 아닌 특별법을 통한 명예회복과 보상 실시

3. 향후 대안

□ 현실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국가유공자' 편입이 법체계의 문제와 일부계층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쉽지않은 상황이므로, 당면해서는 '국가유공자' 부분만 제외시키고 민족민주열사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법률(안) 주요내용

- 시　　기 : 1969년 8월 7일 3선개헌 발의일부터 1998년 2월 24일 국민의 정부 출범까지
- 명예회복 : 추모사업
  추모사업 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특별제심 청구
- 보　　상 : 4·19혁명희생자의 예에 준하여 연금·의료·교육·취업 등 보상지원 및 예우

□명예회복과 보상 실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현행 국가유공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4·19유공자와 5·18관련자,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참전용사와 상이군경' 중심의 현행 국가유공자와는 다른 체계를 통해 예우하도록 하는 방안 도입

→ 독립유공자 / 민주유공자 / 참전용사·상이군경 등 일반국가유공자

유가협 요구안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열린 정치~~개혁~~ 포럼 회원의원님들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가협에서는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주장해 왔으나 현실여건에서 국가유공자 예우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한 특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족민주열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주장해 왔던 것은 단순한 보상을 받자고 투쟁해 왔던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범국민적 추모,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민족민주열사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지켜지고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념사업

당초 법안은 민주화운동을 국가유공행위의 범주에 넣는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으나 이러한 성격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기념사업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묘역의 조성, 기념일 제정, 기념관건립, 교과서수록 등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예
제5조 (가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주무부처의 명시

5.18특별법에서는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보상심의위원회는 광주광역시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특별법 시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주체선정

제1조에 국가가 주체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민주화운동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

◆ 적용시기

현재 특별법시안에는 1969년 8월 7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로 명시되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물론 정무위의 사례에서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법안에서 수준이 낮아진만큼 특별법내에서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 명예회복 990514-2

수신 :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목 :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법안 폐기 반대 성명

담당자 : 김학철 (추모연대 집행위원장 전화 718-0479 전송 718-0478, 016-257-3180)

문서분량 : 공동성명서 포함 3쪽

보 도 협 조 요 청

유공자로 예우 없는 보상법 전환 반대 공동성명

1. 언론 정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인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주요 골자 : 1969년 8월 7일 삼선개헌 발의일부터 1998년 2월 24일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일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사망한자, 상이를 입은자, 질병을 앓고 있는자,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예우함. 그리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하여 특별 재심을 하여 종국적 실체 판결을 함. 국가차원의 기념사업 등을 수행함.)이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민회의에 의해 폐기되고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전환되어 보상 중심으로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 정부와 여당의 이와같은 기도는 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이루고자 하였던 애초의 목표는 간곳 없이 오히려 돈 문제로 처리되어 열사들의 명예에 누를 끼치게 되므로 민주시민단체들은 이를 반대하고 원래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5층(우150-032)/전화(02)635-1133/전송(02)635-1134/ID:KCTU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문의 : 정성희 대외협력실장(011-748-7126), 신현훈 국장(636-0166, 011-256-6103)

성명서

열사들의 죽음을 돈만으로 환산하지 말라. 보상법을 철회하고 유공자로 예우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李甲用)은 나라와 겨레를 위해,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목숨까지 던졌던 수많은 열사들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김대중 정부에게,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기대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특례법안' 상정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며 분신 운명한 이후로 노동계에서만도 지금까지 93명의 노동열사들이 운명하셨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열사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만 했음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일자리마저 보존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전태일 열사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말라."고 마지막 절규를 하였고 뒤를 이은 열사들이 "내 죽음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다.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몰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열사들의 죽음을 돈만으로 해결하려는 기만책을 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유공자 예우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등에 관한 법률안'을, 구차한 이유를 들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꿔치기 하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열사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고 있는 이 때에 열사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국민회의에서 유공자 법을 보상법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열사들의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사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이를 즉각 중단하고 열사들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국민회의는 이와같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현안 투쟁과 결부시켜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9년 5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특별법 전환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시민단체공동성명서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법안' 폐기는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최근 인권법안이 법무부 안으로 타결되면서 인권 단체들의 한결같은 바램인 인권 신장을 위한 법안으로 되기보다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인권법안으로 되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는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 마저도 야당까지 찬성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부처인 국가보훈처가 반대한다 하여 이 법안을 폐기시키고 보상 중심의 특별법으로 돌리려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던 열사들에 대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국가 차원에서 예우한다는 취지로 법안이 만들어져 국회에 상정되었다. 우리는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그리고 조만간 제정 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이제야 나라와 국민들이 지고 있는 정신적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겠구나 하고 환영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70 노구의 유가협 부모님들과 추모단체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해야만 법제정이 되어 가는 현실이 못내 아쉽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만간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의도에서 천막농성을 한지 반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보훈처의 반대로 법안을 폐지시킨다는 것은, 겨울을 보내며 이제나저제나 하며 천막 농성을 한 6개월의 세월이 무위로 돌려짐과 아울러 민주화운동을 계승하였다고 하는 김대중 정권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법안 폐기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부정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기에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런 역사를 간직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 법안을 폐기시키고 보상 중심의 특별법으로 돌리려 하는 것은 열사들을 욕되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열사들의 죽음을 돈만으로 해결하려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보상 이후 추후에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나 추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이 폐기되는 것을 반대하며 더욱이 이를 특별법으로 돌리려는 행위는 열사들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를 저지시킬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 열사들을 민주화운동유공자로 하여 국가 차원에서 예우할 수 없다면 이를 욕되게 하지 말고 그대로 둘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열사들에 대한 유공자 예우는 향후 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한 정권을 창출하여 그 때 가서 하면 될 일이다.

열사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열사들의 가족까지 비참하게 만드는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법안 폐기와 특별법 전환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1999년 5월 1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국민승리21,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개혁국민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대,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청년진보당, 포럼2001, 한국국제문제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준) (이상 가나다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651-30 3/1 한울삶 전화 764-1684 팩스 743-2835
(담당자 사무국장 손송필 016-231-1611)

문서번호 : 991102-01
수 신 : 인천운동사랑방
발 신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제 목 : 유가협 천막농성 1주년맞이 기자회견 및 특별법제정 결의대회 보도 요청서

유가협 천막농성 1주년 맞이 기자회견 및 특별법 제정 결의대회 보도 요청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가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안」)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한지 11월 4일로 1주년이 됩니다. 천막농성 1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귀 사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유가협 천막농성 1주년 맞이

□ 기자회견
1999년 11월 4일 11시

□ 특별법 제정 결의대회
1999년 11월 4일 16시

덧붙임 : 1. 기자회견, 결의대회 행사내용
2. 유가협 특별법 제정 추진 과정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 배은신(직인생략)

<덧붙임 1.>

유가협 천막농성 1주년 맞이 기자회견 및 특별법제정 결의대회

11월 4일로 1주년을 맞이하는 유가협 천막농성. 혈육들을 잃고 살아온 시간으로도 모자라 국회앞 천막에서 1년의 낮과 밤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러나 제정을 목표로 삼았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정기국회 폐회를 40여일 앞둔 지금까지 한치의 진전도 없습니다. 이에 유가협 국회앞 천막농성 1주년을 맞이하여 각계의 특별법 제정의 결의를 모아내는 장으로서 각계인사 기자회견과 특별법제정 결의대회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취지>

- 지난 1년간 진행된 유가협의 투쟁을 총화하는 자리
유가협 천막농성 1주년을 맞이하며 아직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규탄의 자리이어야 한다. 민족민주열사들의 참된 삶을 되새기며 지난 일년간을 다함께 돌아보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 이후 특별법제정 투쟁을 집단적으로 진행할 것을 결의하는 자리
유가협 천막농성1주년 맞이 대회가 단순한 참가의 자리가 아니라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집중시키겠다는 결의를 집단적으로 내오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대회의 상>

기자회견 - 각계인사 및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규탄과 이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두 개의 특별법을 제정시킬 것을 정치권에 촉구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촉구대회 - 유가협 투쟁의 1년을 함께 공유하며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시키겠다는 결의를 모아 이후 실천투쟁까지 힘있게 진행하는 방식

<세부 일정>

□ 유가협 천막농성 1주년맞이 각계인사 기자회견
일시 : 1999년 11월 4일 11시
장소 : 유가협 농성장

참석예정자 : 국민회의 이길재의원, 국민회의 유선호의원, 한나라당 이미경의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상임의장,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의장, 민가협 임기란상임의장
민주개혁국민연합 이장복의장 등

Saturday 4 December 1999

□ 유가협 천막농성 1주년 맞이 특별법제정촉구 대회

09:00 - 13:00 Session 5 - The Way Forward

Next steps in connection with develop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at the national and sub-regional levels

09:00 - 10:30 Proposals for national follow-up,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plans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10:30 - 10:45 Break

10:45 - 13:00 Proposals for sub-regional follow-up

13:00 - 13:30 Closing session

13:00 - 13:15 Closing statement by Representative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3:15 - 13:30 Closing statement by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일시 : 1999년 11월 4일 16시

사전문화공연

대회사 : 유가협 배은심회장님

투쟁상황보고 : 유가협

격려사 : 오종렬 전공연합 상임의장

연대사 :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

문화공연 (조국과 청춘, 이지상, 류금신)

1년을 돌아보며 (유가협 부모님)

투쟁사 : 민추본

전지연설 : 정광훈 전농의장

결의문낭독 :

실천투쟁 : 촛불행진

행진 코스 — 한나라당 → 국회앞 → 국민회의

<덧붙임 2.>

- 유가협의 특별법 제정 추진 과정 -

명예회복 진상규명 투쟁은 86년 8월 12일 유가협 창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독재정권과의 거대한 싸움은 열육들의 죽음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1986년 8월 12일 - 유가협 창립

1988년 10월 17일 - 89년 2월 27일 독재정권의 서슬 퍼런 통치하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135일간의 농성 투쟁 전개(기독교회관)

93년 5월부터 - 의문사 전면재조사촉구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 전국을 순회하여 10만여명 서명 조직화

94년 10월 25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각 당대표 및 의원들 서명은동 전개

11월 4일 의문사 진상재조사 촉구를 위한 국회청원서 제출

97년 12월 대통령 후보 3인에 대해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의문사 신상규명 특별법 공약화 요구

1998년 4월 24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 (서울역)

5월 25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에 대한 국방부 항의 방문

5월 30일 이날까지32일간의 1단계 서울역 캠페인을 진행
6월부터 대국민캠페인 2단계 투쟁으로 매주 금요일 서울역에서 대국민캠페인 진행
6월 12일 안기부 항의방문
6월 19일 기무사 항의 방문
6월 26일 경찰청 항의 방문 - 유가협 부모님 10분 강제연행
7월 1일 - 13일 유가협 부모님 강제연행에 대한 경찰청 항의 집회
7월 14일 경찰청장 면담, 강제 연행에 대한 사과 빙문
7월 24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국회귀빈식당)
노사정위원회 항의방문
8월 3일 민족민주열사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범국민
추진위원회 결성 (향린교회)
9월 1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2차 학술회의 (기독교회관)
9월 14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민대토론회 (조계사)
9월 15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국회)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청원
10월 20일 유가협 대표 청와대 방문 대통령과의 면담
10월 30일 4월 24일부터 서울역에서 시작한 대국민 캠페인 1, 2단계 투쟁을 정리
11월 3일 유가협 13차 정기총회에서 국회앞 천막농성을 결의
11월 4일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위한
국회 앞 농성 시작
11월 5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 면담
11월 13일 안동선 이부영 의원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에 대하여 질의
11월 21일 열사명예회복 의문사 진상규명 완심수 문제 해결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인권대회 (국민회의 당사앞)
12월 11일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 국회제출
KNCC 인권상 수상
12월 28일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및예우등에관한법률안
법사위원회에 심정
12월 30일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 해당 상임위가 법사위가 아님을 결정
1999년 1월 7일 유가협 전체회의에서 농성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의
2월 5일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 소관상임위가
정무위원회임을 법사위에서 결정
3월 16일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및예우에관한법안 정무위원회상정
3월 22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3당간 합의를 이루지 못함
3월 29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 유가협 부모님 7인 삭발식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3월 31일 국가보훈처 담당자 면담 - 법안제정에 대한 난색을 표명
4월 6일 - 8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회의 당사 농성
5월 13일 민주화운동관련유공자명예회복및예우에관한법안이 국가보훈처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국민회의측 법안 내용 수정 제안(정부부처의 반대로 법안제

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유공자부분을 제외한 5. 18 특별법 수준의 법안으로 재추진)

5월 14일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 - 유선호, 이상수, 원채정, 이길재의원 참석 (국회 귀빈식당) 유가협의 입장(기념사업의 구체적 명시, 적용시기의 원안 고수등) 전달.

5월 28일 국민회의 이상수의원 면담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음

6월 23일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과 두 개의 법안에 대한 마지막 협의를거침

6월 24일 국민회의 제1정책조정위원장 이상수 의원 기자간담회 형태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 발표

6월 30일 국민회의 김영배 총재권한대행 국회대표연설에서 두 개의 법안을 제정할 것을 천명

7월 7일 정와내 김성재 민정수석 전박 방문

7월 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특별법안」 국민회의 입론으로 국회에 제출

7월 16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국민회의 자민련 법무부간의 당정협의 -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국회제출에 대한 합의 도출

8월 2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회의 자민련 공동발의로 국회제출

8월 4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특별법」 국회행정자치위 상정 행자위 8월 6일로 연기

274일간의 국회앞 천막농성의 일지로 206회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며 유가협 단식농성 돌입

8월 6일 한나라당 이상득 정책위의장 면담 - 두 개의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당론을 내올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들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9일로 연기

8월 9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특별법」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 토론 거친후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

8월 10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특별법안」 차기회의로 토론 연기

8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특별법안」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헤.

8월 13일 유가협 선제회의에서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기로 결의

8월 25일 국민회의 한나라당 일부의원(이길재, 이상수, 유선호, 이미경, 이수인, 이석현의원등)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1월 4일 현재 국회앞 농성이 366일째에 이름

★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당사앞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작년 정기국회마지막까지 진행하였고 이후 국회 정문앞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피켓팅을 진행하였다.